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10월 3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무역투자실 총괄기획과 안병화 과장(2110-4535), 김성철 사무관(2110-4542)
활용촉진과 신동준 과장(2110-4511), 유동훈 사무관(2110-4508)
김헌진 사무관(2110-4516)

제6차 FTA 활용촉진 협의회 개최

-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선택권 및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Supply Chain) 중심의 교육 지원 확대

1 FTA 컨설팅사업의 컨설턴트 역량 강화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컨설팅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참여도 제고

○ **(배경)** FTA 컨설팅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기업의 요구도 증대**

○ **(운영현황 및 문제점)** 현재 4개 기관*에서 컨설팅사업을 운영 중이나, 지원기관 사업간 차별성 부족, 운영기준 상이, **컨설턴트 전문성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 제기**

* 산업부(FTA무역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관세청, 중기청(중진공)

○ **(개선안)** 컨설팅 **기관별로 전문특화**하고, **컨설턴트 역량 강화,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컨설팅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선택권도 강화**

① **(특화 및 협력강화)** 컨설팅 기관별로 **전문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행기관간 타 기관사업 안내 등 협력 활성화**

* (종합센터)공급망 합동컨설팅, (지역센터)지역유관기관 합동설명회,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등 공적증명분야, (중기청) 수출연계 컨설팅

②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 기업의 책임성과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전면 도입**

- 기업부담을 감안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부담수준을 차등 설정**

* 50억 이하 10%, 50~500억원 20%, 500억원 초과 30%

③ **(컨설턴트 역량강화)** 컨설턴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컨설팅 투입 전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최소 3일 이상**의 **사전교육**을 실시하되,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공통교육(1일 이상)**과 기관 **자체교육(2일 이상)**을 **병행**
- 또한, 컨설팅 신청시 **기업에게 컨설턴트 풀**을 **제공,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인 **기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

④ **(사후관리 강화)** 컨설팅 중복방지원칙 완화, 의무적 A/S기간 제공, 평가체계 개편 등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

- **旣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라도 신시장 진출, 신상품 추가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컨설팅**을 **제공**
- 최소 **1개월 이상의 A/S기간 제공**으로 컨설팅 종료 후 실무 적용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
- 컨설턴트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우수 컨설턴트**에게는 차년도 사업 우선배정과 **성과급**(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지급**

⑤ **(지역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센터 파견**관세사**를 **증원(20→40명)**하고, 관세사 **파견기간**을 **1년 단위***로 **조정**하여 컨설팅 공백 방지

* ('13년 계약기간) '13.3.12~12.31 → ('14년 계약기간, 예시) '14.2.1~'15.1.31

- 또한, **관세사 채용**에 **지역센터**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전제로 **재계약**을 **허용**하여 컨설팅 연속성 보장

○ **(향후 추진계획)** 효율화 방안중 **관련기관 공통적용사항***은 **공통지침을 제정**하여 차년도 컨설팅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시 반영**

* 컨설턴트 사전교육, 수익자 부담원칙, 컨설팅 A/S, 우수 컨설턴트 우대 등

- 기관별 사업계획수립 전에 **관련기관 실무협의회***('14.1월초)를 개최하여 **추진과정 점검**과 **애로사항 협의 예정**

②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기업까지 FTA 활용을 공동 교육하여 공급망내 원산지관리 역량을 동반 향상시켜 나갈계획

○ **(배경)** 수출제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부품·소재의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나, **협력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부족으로 FTA 활용에 애로**

○ **(추진현황)**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공급망 교육을 '13년 도입하여 **'13.10월말 현재 13개 공급망, 총 272개사 대상으로 교육**

* 전체 교육대상의 84.7%가 교육 내용에 대해 '만족'으로 응답

① **(대상선정)** 업종 단체, 유관기관 **추천 및 컨설팅 과정**에서 발굴, 모집

* '13년은 FTA 활용준비가 미흡한 완성차 2~3차 협력업체, 품목분류가 복잡한 기계류 수출업체의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선정

② **(교육구성)** 사전협의시 **업체/품목별 특성을 교육안에 반영**

* 업체/품목별 원산지관리 특성, 유의점 등을 커리큘럼에 사전 반영
* 수요기업(1社)과 협력업체(15~50社)를 소규모 분임에 공동으로 편성

③ **(교육)** 분임별 1인의 **전문가(관세사)를 배치**하여, FTA 활용 수준 분석 멘토링 및 업체별 사례 공유 등을 통한 토론교육 실시

④ **(사후관리)** 교육 후 **필요시 원산지관리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및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지역 FTA센터와 연계**하여 관리

대상 선정	교육 구성	교육 실시	사후 관리
· 업종 단체/ 유관기관 모집	⇨ · 업체(품목별 특성화)교육안 · 분임별 구성	⇨ · 전문가 멘토링 · 사례공유를 통한 자체 진단점검	⇨ · 원산지 컨설팅 · 지역FTA센터 연계 관리

○ **(향후계획)** 연내 5개 공급망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11~12월), **'14년 교육 규모 및 업종분야 확대, 분기별 집중교육 등 추진**

* (대상확대) '13년 18개→'14년 25개 이상 공급망으로 규모를 확대
(업종 확대) 자동차·기계 업종 → 가전·화학 등으로 업종 확대
(집중 교육) 협력사별 품목 특성에 따른 분기별 집중 교육을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3.10.29(화) 오후 4시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6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관세청·중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3명 및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2명이 참석

□ 금번 회의에서는「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공급망 원산지 교육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등이 보고·논의되었음

○ 산업부는 FTA 컨설팅의 질 제고 및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을 보고

- 컨설팅 기관별로 전문성을 특화하고, 컨설턴트 역량 강화,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컨설팅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선택권도 강화키하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는 「공급망 원산지 교육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을 보고

-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기업까지 FTA 활용을 공동 교육하여 공급망내 원산지관리 역량을 동반 향상시키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아울러, 지난 10.10일 개최되었던「FTA 성공사례」입상기업 중 2개 기업의 FTA 활용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음

□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FTA 컨설팅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힘

< 첨부 1 >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
< 첨부 2 > 공급망 원산지 교육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 첨부 3 > 성공기업사례1 : 니프코코리아
< 첨부 4 > 성공기업사례2 : 데코리아제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안병화 총괄기획과장(☎ 02-2110-45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6차 「FTA 활용촉진 협의회」 개요

□ **일시 · 장소:** '13.10.29(화), 16:00~17:20,
산업통상자원부 다산실(623호)

□ **참석: 관계부처 실장급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 등 24명**

* 주재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간사 :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

□ **회의안건(안)**

①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산업부)
② 공급망 원산지 관리 교육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③ FTA 비즈니스 우수사례 발표(2개 기업)

□ **회의진행(안)**

순서	시간	비고
▪ 인사말씀	16:00~16:05(5분)	산업부 (무투실장)
▪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 발표 및 토론	16:05~16:25(20분) (발표:5분, 토론15분)	산업부
▪ 「공급망 원산지 관리 교육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발표 및 토론	16:25~16:45(20분)	FTA종합 지원센터
▪ 「FTA 비즈니스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16:45~17:05(20분) (발표: 각 5분)	니프코코리아 데코리아제과
▪ 마무리 말씀	17:05~17:10(5분)	산업부 (무투실장)

참고 2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위원 명단

구 분	소속/직위	비 고
관계부처 (14명)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회의주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위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해양수산부 수산실장	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위원
	중소기업청 차장	위원
	관세청 차장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간사
유관기관 (12명)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위원
	무역협회 부회장(FTA무역종합센터장)	위원
	KOTRA 전략마케팅 본부장	위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사장	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본부장	위원
	대한상의 부회장	위원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위원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위원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위원
	수출입은행 부행장	위원
	산업연구원 부원장	위원

첨부 1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

2013.10.29.

관계 부처 · 기관 합동

차 례

Ⅰ. 검토배경 ····· 1

Ⅱ. FTA 컨설팅 운영현황 및 문제점 ····· 2

Ⅲ. FTA 컨설팅 효율화 방안 ····· 4

1. 수행기관별 컨설팅 특화 및 협력강화 ····· 4

2.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 및 컨설팅 공백기간 최소화 ·· 5

3. 컨설턴트 역량강화 ····· 6

4.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 ····· 7

5. 지역센터 운영 활성화 ····· 8

Ⅳ. 향후 추진계획 ····· 9

(참고) FTA 컨설팅사업 운영기관 공통지침 ····· 10

Ⅰ. 검토배경

□ **FTA**를 활용한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최근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간 FTA체결 본격화로 현재 약 55%인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교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

○ 현재 약 35%인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도 협상중인 **한·중 FTA 등이 발효될 경우 70% 이상이 될 전망**

□ 그동안 정부의 FTA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FTA활용율 제고** 및 **다양한 FTA 활용 우수사례 등장** 등 성과

* (수출활용률, '13.9월) 한-EU: 81.2, 한-미: 77.5, 한-ASEAN: 38.7
* (활용수준)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수출기업과 협력사간 원산지 관리 협력, 기타 수출입선 다변화, 생산협력 등 기업 경영의 전반으로 확대

○ 그러나, FTA 활용이 필요한 기업수에 비해 **컨설팅 지원 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기업**의 **요구**도 **증대**

* FTA 현장컨설팅(단순상담 제외)은 '10년 이후 현재까지 약 7천여개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전체 기업수는 약 15.6만개사(수출기업 8.6만개, 협력기업 7만개)

□ 정부 **컨설팅 지원사업**의 양적확대*와 함께 그간 사업 운영과정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을 기할 필요**

* 내년도 지역FTA지원센터 파견 전문가를 현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예정

○ 컨설팅 제공 **기관간 협력** 및 공통운영기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지침**을 **제정**하여 효율화 도모

Ⅱ. FTA 컨설팅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컨설팅 운영현황

□ '10년 이후 **FTA 컨설팅**은 **예산**과 **지원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9월말)
예산(백만원)	636	1,688	3,145	4,310
지원기업수	671	1,861	2,329	2,078

* '10년 기재부 지원사업 이후 '13년 현재까지 4개 기관 합계

○ 이는 한-EU('11.7.1), 한-미('12.3.15) 등 **새로운 FTA 발효에 따른 정부 지원 확대**와 **기업의** FTA에 대한 **적응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

* FTA별 컨설팅 활용현황('12년 닥터FTA 결과분석): 미국(30%), EU(27%), ASEAN(21%), 기타(22%)

□ '13년 현재는 관세청 등 4개 기관에서 FTA 컨설팅 실시 중

구분	산업부 (FTA종합센터)	산업부 (지역FTA센터)	관세청	중기청 (중진공)
사업명	OK FTA	지역밀착형 컨설팅	중소기업 FTA컨설팅	FTA·수출 컨설팅
'12 실적 ('13목표)	232건 (약 300건)	424건 (약 800건)	477건 (약 500건)	1,196건* (약 700건) *닥터FTA 1,149건 포함
'13예산(억원) ('14정부안)	12 (12)	10 *파견관세사 20명 (20) *파견관세사 40명	12.3 (10)	8.8 (8.8)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기간	10일	1~2일	5일	FTA 5일 수출 3일
지원금액 (기업부담)	4백만원 이내 (무료)	무료	4백만원 이내 (평균 250만원) (기업규모별 0~30%)	FTA 2백만원한도(30%) 수출 1백만원한도(30%)
컨설턴트	약 60명 * 협약을 맺은 3개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	20명	235명	527명 *관세사 204명, 무역전문가 363명 등

2 운영상의 문제점

□ **[지원기관]** 컨설팅 기관간 **차별성**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

○ 4개 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에 큰 차이가 없고, **기관간** 협력보다는 **실적 경쟁**으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

☞ **수행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화하고, 기관간 협력강화**

□ **[운영방식]** 기관별로 컨설팅 **수진기업**의 **비용부담 수준**이 **다르고**, 사업기간이 3~11월로 **컨설팅 공백 발생**

☞ **컨설팅 비용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컨설팅 공백방지방안 마련**

□ **[컨설턴트]** **컨설턴트**의 **전문성 부족**과 컨설턴트간 **역량 차이**로 일부 **수진기업**의 **만족도 저하**

☞ **컨설턴트 능력향상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기업에 컨설턴트 선택권 부여, 컨설턴트 구성 다양화**

□ **[사후관리]** 기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컨설팅이나 사후관리 미흡**

○ 신시장 개척, 수출품목 다변화 등 기업환경이 변화하였더라도, **기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추가 컨설팅 곤란**(컨설팅 중복방지원칙)

☞ **컨설팅 중복방지원칙을 완화하여 일정한 경우 추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후관리 강화, 컨설턴트 평가체계 개편**

□ **[지역센터]** 파견 관세사 채용 등에 **지역센터**의 **의견 반영**이 어렵고, **종합센터와**의 **연계컨설팅 부족**

☞ **지역센터 파견 관세사 운영을 효율화하고, 종합-지역센터간 컨설팅 연계 강화**

Ⅲ. FTA 컨설팅 효율화 방안

1 수행기관별 컨설팅 특화 및 협력강화

□ **[기관별 특화]**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관별**로 전문성을 살린 **특화된 컨설팅도 제공**

구분	산업부 (FTA종합센터)	산업부 (지역FTA센터)	관세청	중기청 (중진공)
기관 특화	공급망 합동컨설팅, 업종별 협단체 연계컨설팅	지역 유관기관 합동설명회, 지역특화산업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 품목분류, 사후검증	FTA·수출 연계 컨설팅, 무역전반 종합컨설팅

○ **(종합센터) 공급망 합동컨설팅**을 **확대**하고, **업종별 협단체**와 **연계** 컨설팅, 사후검증 지원(FTA-Helper)

* '12년 SCM(Supply Chain Management)컨설팅 비율 48.7%(113/232개사)

○ **(지역센터) 유관기관**(세관, 상의 등) **합동** 설명회, **지역 특화산업*** **컨설팅**

* 충남북(전자부품), 전남(석유화학), 경남(수송기계), 경북(철강), 대구(섬유) 등

○ **(관세청)** 국가기관의 **공적증명**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후검증 분야 컨설팅

* '13년 하반기부터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최대 200만원) 추가

○ **(중기청) FTA와 수출 컨설팅**을 **연계**한 마케팅, 바이어발굴, 물류 등 **무역단계별 종합 컨설팅**

□ **[협력강화]** **수행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컨설팅 활용 편의 제고**

○ 기업의 컨설팅 신청서 검토 후 타 기관 컨설팅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기관 사업 안내** 및 **이관** 활성화

○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타 기관의 **컨설팅 사업 링크**, **FTA 1380 인터넷 포털**을 통한 **통합공고**, **교육·홍보책자** 제작시 타 기관**사업 안내** 등

2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 및 컨설팅 공백기간 최소화

□ **(수익자 부담원칙)** 기업의 **책임성과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전 기관**으로 **확대**

○ 4개 기관 중 **2개 기관은 무료, 2개 기관은 유료** 컨설팅으로 수진 기업간 **형평성** 및 **假수요 문제, 소극적 참여**로 인한 효과성 저하

* 유료인 관세청 컨설팅의 경우에도 실제 비용부담 기업은 30% 수준에 불과

< 기관별 컨설팅 기간 및 금액 >

구분	산업부 (FTA종합센터)	산업부 (지역FTA센터)	관세청	중기청 (중진공)
지원기간	10일	2~3일	5일	5일
건당지원금액 (기업부담)	4백만원 (무료)	무료	2.5백만원 (매출액기준 0~30%)	2백만원 (30%)

○ **수익자 부담원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매출액 기준**으로 **부담 수준**을 **10~30%로 차등 설정**하여 **기업간 실질적 형평 도모**

- 기업부담을 감안하여 매출액 **50억 이하**(59.9%)**는 10%, 50~500억원**(34.7%)은 **20%, 500억원 초과**(5.4%)기업은 **30%** 수준으로 설계

< 매출액별 컨설팅 현황 및 기업부담율 >

'12년(FTA닥터+OKFTA) 컨설팅 실적				기업부담(%)	관세청 기준	
전년 매출액	업체수(개)	비율(%)			전년 매출액	기업부담(%)
1,000억 초과	30	2.2	5.4	30	1,000억 초과	30
500억~1,000억	45	3.2			500억~1,000억	20
100억~500억	291	21.1	34.7	20	100억~500억	10
50억~100억	187	13.6			100억 이하	0
50억 이하	828	59.9		10		
합 계	1,381	100				

* '12년 FTA닥터컨설팅(중기청+정보원)과 OKFTA(종합센터) 실적 분석 기반

□ **(사업기간 조정)** 사전 사업준비를 통해 컨설팅 **사업공고**를 **2월**로 앞당겨서 **컨설팅 공백기간 최소화**

< 기관별 컨설팅 사업기간 >

구분	산업부 (FTA종합센터)	산업부 (지역FTA센터)	관세청	중기청 (중진공)
컨설팅 기간 (사업공고)	3월~11월 ('13.3.12일)	3월~11월 (3.12일, 관세사파견일)	3월~11월 ('13.3.7일)	3월~11월 ('13.3.8일)

3 컨설턴트 역량강화

□ **(컨설턴트 사전교육)** 컨설턴트 전문성 제고와 컨설턴트간 편차 완화를 위해 **사전교육 강화**

○ 각 기관에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관세사 등을 컨설턴트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컨설턴트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기업 불만**

- 컨설턴트 희망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현장 투입 전에 일정기간의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기관별 컨설턴트 자격요건 및 사전교육 현황>

구분	산업부 (FTA종합센터·지역센터)	관세청	중기청 (중진공)
컨설턴트 자격요건	관세사 (종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 (원산지정보원 주관 "FTA컨설턴트 양성과정" 이수자)	관세사 (원산지관리교육을 이수하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사전교육	자체교육(1일)	원산지정보원(5일)	자체교육(1일)

○ **사전교육**은 **최소 3일 이상** 실시하되, **공통교육(1일 이상)**과 함께 기관 **자체교육(2일 이상)**도 **병행**

- **공통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FTA 컨설팅 기본교육**을, **기관 자체교육**은 기관 전문성을 살린 **특화교육**을 실시

* 원산지정보원 등을 활용, 참여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공통프로그램 개발·운영

□ **(컨설턴트 풀 제공)** 컨설팅 신청시 **기업에게 컨설턴트 풀**을 **제공,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인 **기업**의 **만족도 제고**

○ 컨설팅 신청 사이트에 전문FTA, 전문품목 등으로 분류된 컨설턴트 풀을 제공하고, **신청기업**은 기업여건에 **적합한 컨설턴트 선택**

* 중기청에서는 '13년부터 시행(FTA·전문분야·전문품목·소재지별 전문가 풀 제공)

□ **(컨설턴트 구성 다양화)** FTA 전문가 육성을 위해 각 기관이 **FTA 컨설턴트 자격 공고시 원산지관리사**(국가공인자격, '12.12.27) 등도 **포함**

○ **실무능력**이 **검증**된 **원산지관리사** 등에 **한해 컨설턴트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FTA 전문가 육성과 활용, **전문가 群간 경쟁 유도**

4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

□ **(중복방지원칙 완화)** 컨설팅 중복방지원칙*을 완화하여 **기업의 FTA활용 환경 변화시 추가적인 컨설팅 제공**

*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컨설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정부지원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 기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이후 상황변화로 이전보다 더 컨설팅이 절실한 경우에도 **중복방지원칙**으로 **실질적 컨설팅 사각지대 발생**

○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FTA활용 의지**가 있는 **기업**에 **동기 부여**

* 신시장 진출, 신규상품 수출, 담당자 퇴사, 기존에 부분 컨설팅만 받은 경우

□ **(컨설팅 A/S)** **컨설팅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A/S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컨설팅 이후 업무수행과정 연계 강화**

○ 컨설턴트와 **컨설팅 계약**시 **최소 1개월 이상**의 **A/S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컨설팅 종료 후 실무 적용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 다만, 컨설턴트의 부담완화를 위해 A/S는 **전화와 이메일로 한정**

□ **(평가)** **컨설턴트 평가체계**를 **정비**, 평가결과 **우수 컨설턴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수진기업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 기업 만족도 등 **정성평가 반영비율**을 **높이고, 우수 컨설턴트**에게는 차년도 **사업 우선배정**과 **성과급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컨설팅 건당 총액의 10% 추가 지급

○ 각 기관의 컨설팅 사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컨설팅 사업**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 등에 활용

5 지역센터 운영 활성화

□ **(지역센터 현황)** **16개 지역센터**에 **20명**의 **관세사**가 컨설팅 수행 중

○ 지역센터 파견관세사는 **종합센터**에서 관세법인과 계약을 통해 법인 소속 관세사를 **1년 단위로 파견**

- 관세사 부족(1~2명)으로 **현장 컨설팅 여력 부족**(1~2일 위주로 단기 컨설팅)과 **1인 지역**의 경우 컨설턴트가 현장 출장시 **컨설팅 공백** 발생

- **계약기간**이 통상 **3월~12월**까지로 **연초 컨설팅 공백**과 **연속성 부재**로 인한 지역밀착형 컨설팅 수행의 어려움

- 종합센터 파견형태로 관세사 채용시 지역센터 의견반영이 어려움

□ **(개선방안)**

○ **(컨설팅 인력충원)** 지역센터 **파견관세사**를 **증원***하여 지역센터별 컨설팅 수요와 실적 등을 반영하여 **차등 배치**

* 14년 예산안에 지역센터 파견관세사 증원 반영(20→40명)

○ **(관세사 계약기간 조정)** 관세사 **파견기간**을 **1년 단위***로 **조정**하여 **컨설팅 공백 방지**

* ('13년 계약기간) '13.3.12~12.31 → ('14년 계약기간, 예시) '14.2.1~'15.1.31

○ **(종합컨설팅 강화)** **종합센터 컨설팅**과 **연계**하여 **종합컨설팅 강화**

- **지역센터의 역량을 넘어서는 수요**는 **종합센터 컨설팅**(최대 10일)과 **연계**함으로써 컨설팅 인력과 전문성 부족의 한계 극복

○ **(지역센터 의견 반영)** 관세사 채용 등에 있어 지역센터 의견 반영

- **지역센터**가 희망할 경우, 당해지역 **관세사**를 **직접 채용** 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 개선

- 지속적 예산확보를 전제로 **재계약**을 **허용**하여 **컨설팅**의 **연속성 보장**과 컨설턴트의 안정적 고용여건 조성

Ⅳ. 향후 추진계획

□ 컨설팅 효율화 방안중 **관련기관 공통운영기준***은 **공통지침을 제정**하여 차년도 컨설팅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시 반영**

* 컨설턴트 사전교육, 수익자 부담원칙, 사업공고기간 조정, 컨설팅 A/S 등

□ 기관별 사업계획수립 전에 **관련기관 실무협의회***('14.1월초)를 개최하여 **필요사항 조정 및 협력**

* 관련부처 과장급으로 구성, 반기 1회 회의개최 원칙, 산업부 간사부처

□ 주요항목별 추진일정

구 분	기 관	추진일정
① 수익자 부담원칙*, 중복방지원칙 완화 * 기업부담율 10~30%	관세청 중진공 FTA센터	○ 사업공고시 반영('14.2월)
② 사업공고기간 단축	관세청 중진공 FTA센터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14.1월) ○ 사업공고('14.2월 2주째 이내)
③ 컨설턴트 사전교육	관세청 중진공 FTA센터	○ 교육기관 지정, 컨텐츠 확정('13.12월) ○ 컨설턴트 사전교육('14.1월)
④ 컨설턴트 풀 기업 제공	관세청 중진공 FTA센터	○ 컨설팅신청 시스템 보완('14.1월) ○ 컨설턴트 풀 제공('14.2월)
⑤ 컨설팅 A/S 제공	관세청 중진공 FTA센터	○ 컨설턴트와 컨설팅 계약체결시 반영('14.2월)
⑥ 수행기관 종합평가	산업부	○ 평가 내용·방식 기관 협의('13.1월초) ○ 평가실시('13.1월중순, 잠정)
⑦ 파견관세사 파견기간 조정 * '14.2.1~'15.1.31(잠정)	산업부 FTA센터	○ 관세사 채용공고 및 심사('14.1월) ○ 관세사 파견('14.2월)

참고 **FTA 컨설팅사업 운영기관 공통지침**

본 지침은 FTA 컨설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지원 FTA 컨설팅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부(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청,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상호협력과 사업 운영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일반원칙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각 기관은 기업이 컨설팅 신청시 타 기관의 컨설팅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기관사업 안내, 이관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유기적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각 기관은 2014년 부터 기업규모별로 컨설팅 비용을 10~30% 징수하기로 하며, 2014년 사업 공고시 동 사항을 반영한다.

3. 각 기관은 컨설팅 공백기간 단축을 위해 2014년 부터 사업공고를 2월 둘째주 이내에 실시한다.

4. 각 기관은 컨설턴트의 능력향상을 위해 컨설턴트 사전교육을 최소 3일 이상 실시한다. 이중 기관 공통교육은 1일 이상으로 하고 교육기관과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기관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5. 각 기관은 2014년 사업부터 컨설팅 신청기업에 컨설턴트 풀을 사전에 제공하여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6. 각 기관(지역FTA센터 포함)은 기존에 국고지원 컨설팅 사업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추가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합의하며, 추가로 제공하는 컨설팅 범위 등은 기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다.

7. 각 기관은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컨설턴트로 하여금 최소 1개월 이상의 컨설팅 A/S 기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8 각 기관은 컨설턴트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우수 컨설턴트에 대한 사업 우선배정과 가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9 동 지침의 진행상황 점검 및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간사부처는 산업부가 맡는다.

첨부 2 | 공급망 원산지관리 교육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공급망 원산지관리 교육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2013.10.29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 례

Ⅰ. 추진 배경 ····· 1

Ⅱ. 교육 개요 ····· 2

1. 개념 및 현황 ····· 2

2. 교육 과정 ····· 2

Ⅲ. 교육 특징 및 실적 ····· 3

1. 특징 및 효과 ····· 3

2. 만족도 및 실적 ····· 3

Ⅳ. 추진 계획 ····· 4

Ⅰ. 추진 배경

□ 수출제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서는 부품·소재의 원산지확인이 필수적이나, **공급망 내 원산지관리 역량이 취약할 경우 FTA 활용에 애로**

○ **(협력업체)** 전문성 부족, 영세한 규모 등으로 **원산지관리에 소극적**

– FTA 전담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원산지관리 역량에 한계

– 직접 수출기업이 아닌 경우 원산지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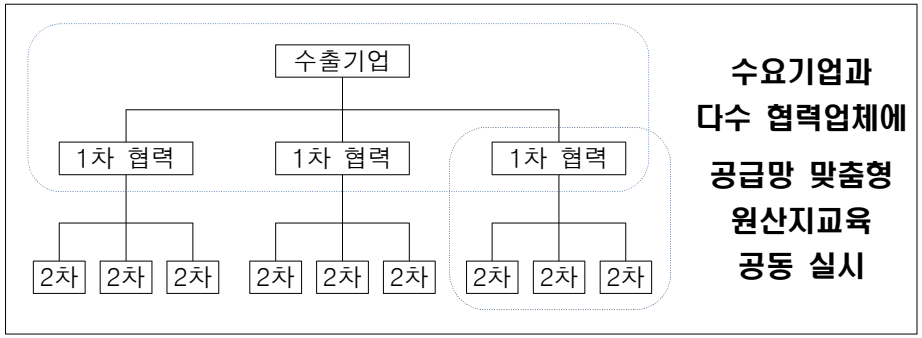
○ **(수출업체) 다수 협력업체의 원산지를 함께 관리**하여야 하나, **업체별 원산지관리 역량 격차**가 커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

□ 다수 협력업체와의 단계별 협업을 통해 최종제품이 생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급망 생태계 중심의 FTA 원산지 교육이 보다 효과적**

* 승용차 1대 생산을 위해서는 평균 1만여개 이상의 부품 사용 필요

○ 수요기업과 협력업체의 분석을 통해 **개별 공급망 실정에 맞춰 차별화된 원산지교육이 요구**되나, 그간의 **불특정 다수 기업 대상 교육**으로는 실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다소 미흡**

○ 공동 교육을 통해 **공급망내 원산지관리 역량을 동반 향상**시키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Ⅱ. 교육 개요

1 개념 및 현황

□ **[개념]** 공급망 내 **수요기업과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원산지관리 교육으로, **FTA센터에서 '13년 최초로 도입**

□ **[현황]** '13.10월말 현재 13개 공급망, **총 272개사 대상으로 교육 실시**

2 교육 과정

□ **[대상 선정]** 업종 단체, 유관기관 **추천 및 컨설팅 과정**에서 발굴, 모집

○ '13년은 FTA 활용준비가 미흡한 완성차 2~3차 협력업체, 품목 분류가 복잡한 기계류 수출업체의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선정

□ **[교육 구성]**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업체/품목별 특성을 교육안에 반영**

○ 업체/품목별 원산지관리 특성, 유의점 등을 커리큘럼에 사전 반영

○ 수요기업(1社)과 협력업체(15~50社)를 소규모 분임에 공동으로 편성

□ **[교육 실시]** 분임별 1인의 **전문가(관세사)를 배치**하여, FTA 활용 수준 분석 멘토링 및 업체별 사례 공유 등을 통한 토론식 교육 실시

□ **[사후 관리]** 교육 후 **필요시 원산지관리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및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지역 FTA센터와 연계**하여 지속 관리

대상 선정	⇨	교육 구성	⇨	교육 실시	⇨	사후 관리
· 업종 단체/유관기관 모집		· 업체/품목별 특성 교육안 반영 · 분임별 구성		· 전문가 멘토링 · 사례공유를 통한 자체 진단 점검		· 원산지 컨설팅 · 지역FTA센터 연계 관리

Ⅲ. 교육 특징 및 실적

1 특징 및 효과

□ **(공동 교육)** 긴밀한 관계가 있는 수요·협력업체를 **공동 교육함으로써 공급망 사전 컨설팅에 준할 정도로 교육 효과가 극대화**

○ **(수요기업)**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 역량과 업무 이해도 향상으로 **정합성 높은 원산지확인서 수취 및 원활한 사후검증 대비 가능**

○ **(협력업체) 신뢰도 높은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원산지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수요기업과의 안정적인 제품 공급망 유지 기대**

□ **(맞춤 교육)** 공급망의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국가 분석을 통해 해당 공급망별 **특화된 커리큘럼**을 기획·구성, **맞춤형 교육 실시**

* 맞춤형 교육을 위해 기획/협의→준비→교육→사후관리 등에 25일 이상 소요

□ **(심층 교육)** 분임별로 **전문가를 배정**하여 **소규모 심층 교육이 가능**

2 만족도 및 실적

□ **(만족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대상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전체 교육대상의 **84.7%가 교육 내용에 대해 '만족'**으로 응답, 특히 분임토의를 통한 **맞춤형 멘토링**, FTA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중요성 인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 교육 만족도 : 다소 만족 46.3%, 매우 만족 38.4%, 보통 14.5%, 다소불만족 0.8%
* 만족 부분 : FTA 중요성 인식 28%, 맞춤형 멘토링 28%, 해당 품목 사례를 통한 설명 20%

○ 공급망교육을 받은 업체중 OKFTA 컨설팅 신청률도 43%에 달하는 등 **원산지관리 및 시스템 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

□ **(실적)** 2개 업종, **13개 공급망 272개사 대상**으로 총 17회 실시 완료

< '13년도 공급망 원산지관리 교육 실적(1~10월) >

업종	수요기업	참가기업수	교육횟수	비고
자동차부품 (9개 공급망)	H社	25개	2회	현대차 1차 벤더
	S社	17개	1회	현대차 2차 벤더
	I社	35개	2회	현대차 1차 벤더
	W社	13개	1회	현대차 1차 벤더
	S社	49개	2회	현대차 1차 벤더
	D社	7개	1회	현대차 1차 벤더
	H社	5개	1회	현대차 1차 벤더
	C社	5개	1회	현대차 1차 벤더
	D社	15개	1회	현대차 1차 벤더
기계 (4개 공급망)	S社	41개	2회	공작기계
	D社	26개	1회	조선기자재
	S社	17개	1회	공작기계
	H社	17개	1회	건설기계
총계	**13개사**	**272개사**	**17회**	-

Ⅳ. 추진 계획

□ **('13년)** 5개 공급망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및 **'14년도 교육계획 수립**

○ 연내 5개 자동차부품 공급망에 대한 원산지관리 교육 추가 실시

○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14년 교육 공급망 발굴 및 계획 수립

– 센터와 현대모비스간 업무협의를 통해**'14년 현대모비스 전체 협력사(약 500개)를 대상으로 공급망 교육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

□ **('14년) 교육 규모 및 업종 분야 확대, 분기별 집중 교육 등 추진**

○ **(대상 확대)** '13년 18개→'14년 25개 이상 공급망으로 규모를 확대

○ **(업종 확대)** '13년은 특히 취약한 자동차·기계 업종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가전·화학 등으로 교육 업종 확대를 추진

○ **(집중 교육)** 협력사별 품목 특성에 따른 분기별 집중 교육을 실시

< '14년도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분기별 공급망 교육 계획(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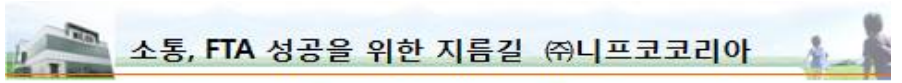
시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업종	전장	램프/사출	샤시/공조	제동/조향
협력업체수	200~300개	100개	100개	100개
지역	경기	경북	충청	경기

첨부 3 **성공기업 사례 #1 니프코코리아**



소통, FTA 성공을 위한 지름길
(주)니프코코리아





목 차

1. 회 사 소 개
2. 주요 생산 품목
3. FTA 활용 계기
4. FTA 성공 POINT
5. FTA 활용 사례
6. 향후 FTA 활용 계획
7. 결 론

NIKKO All rights reserved. Confidential
㈜니프코 코리아

1. 회사 소개

1985.01 회사설립 2008.01 R&D 센터 준공 2004.11 중국(베이징) 법인 설립 2010.12 인도/폴란드 법인 설립
1988.11 울산공장 준공 2011.02 울산공장 신축(확장이전) 2005.04 베트남(호치민) 법인 설립 2011.06 중국(염성) 법인 설립
1993.12 천안공장 준공 2012.02 안양공장 증축 2008.10 미국(알라바마) 법인 설립



NIFCO All rights reserved. Confidential
NIFCO KOREA Inc.
㈜니프코 코리아
We are NIFCO!

2-1. 주요 생산 품목

자동차 부품



NIFCO All rights reserved. Confidential
NIFCO KOREA Inc.
㈜니프코 코리아
We are NIFCO!

2-2. 주요 생산 품목

Buckle

Outdoor Products



Home & Life



NIFCO All rights reserved. Confidential
NIFCO KOREA Inc.
㈜니프코 코리아
We are NIFCO!

3-1. FTA 활용 계기

1) FTA를 알자..!



NIFCO All rights reserved. Confidential
NIFCO KOREA Inc.
㈜니프코 코리아
We are NIFCO!

3-2. FTA 활용 계기

2) 우리가 하자..!

경영진의 결단



" 이제부터 우리 협력사가 고객입니다. "
" FTA라는 세계 무역전쟁에서
고객을 지킬수 있도록 튼튼한 성벽을
만들어 주는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

" FTA TFT 조직구성 "	" 소통 & 협력 "	"FTA 성공의 지름길"
공공기관 교육 최대 활용 (산업통상자원부등)	협력사 FTA 관리 능력 강화 지원을 최우선...	해외 수출품의 가격, 기술 경쟁력 강화

NICO All rights reserved. Confidential
NIFCO KOREA Inc.
㈜니프코 코리아
We are NIFCO!

4-1. FTA 성공적 POINT

1) 전사적인 FTA 관리 지원

FTA 활용을 위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
FTA SYSTEM 구축 완료



FTA 관련 부서 및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

NICO All rights reserved. Confidential
NIFCO KOREA Inc.
㈜니프코 코리아
We are NIFCO!

4-2. FTA 성공적 POINT

2) 협력업체와의 지속적 소통



NICO All rights reserved. Confidential
NIFCO KOREA Inc.
㈜니프코 코리아
We are NIF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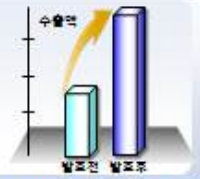
5-1. FTA 활용 사례

1) 수출액의 증가(관세율4~5%감소)



한-EU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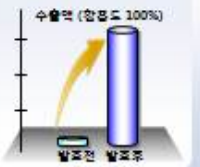
구 분	기 간	해 외 생 산 액 (억원)	수 출 액 (천불)		
			전체(해당FTA)	합점실적	%
발효전	'10.7.1~'11.5.31	2,015	3,389	-	
발효후	'11.7.1~'12.5.31	2,296	8,152	5,890	72.2%
증 감		13%	141% ↑		



* FTA 발효 이후 對 EU 수출 ↗ 141% 크게 증가

한-US FTA

구 분	기 간	수 출 액 (천불)		
		전체(해당FTA)	합점실적	%
발효전	'11.3.15~'11.5.31	733	-	
발효후	'12.3.15~'12.5.31	514	514	100%
증 감		30% ↓		



* 미국 판매회사의 재고 여부 ↗ 발효 후 미 수출 30% 감소

NICO All rights reserved. Confidential
NIFCO KOREA Inc.
㈜니프코 코리아
We are NIFCO!

5-2. FTA 활용 사례

2) 사후검증 대응 역량 강화 / 고객사 신뢰성 확보

사후검증 대응 역량 강화

1. 2012.12 H사 한-EU FTA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검증 대응
 → 총 15개 품목, 이상없음 통보 접수 완료(수입국 : 체코)
2. 2013.05 H사/G사 한-EU FTA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검증 대응
 → 총 27개 품목/총 13개 품목, 결과 접수 대기중(수입국 : 체코/독일)
3. 협력업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FTA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원산지 확인서의 신뢰성 확보/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및 사후검증 부담 경감

고객사 신뢰성 확보

1. 2012.11 자동차 H사, K사 원산지 인증 평가 완료.
 → 원산지 관리능력 검증 PASS
2. 2013.08 자동차 부품 B사, H사 원산지 평가 완료.
 → 원산지 관리상태 "우수" 평가



NIFCO All rights reserved. Confidential
NIFCO KOREA Inc.
㈜니프코 코리아
We are NIFCO!

6. 향후 FTA 활용 계획

FTA 체결국 수출의 증가

한 – IN FTA

對 인도 수출 비중 증가
2012년 : 7.77 억
2013년 : 8.39 억(1월~6월)

한 – 중 FTA

對 중국 수출 비중 증가
2012년 : 42.42 억
2013년 : 34.09 억(1월~6월)



자동차 부품분야 시장 개척 !
디자인, 기술&가격 경쟁력 !
"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 "

NIFCO All rights reserved. Confidential
NIFCO KOREA Inc.
㈜니프코 코리아
We are NIFCO!

7. 결 론



경영층의 관심과 전폭적지원을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시작

NIFCO All rights reserved. Confidential
NIFCO KOREA Inc.
㈜니프코 코리아
We are NIFCO!

저희 ㈜니프코코리아는 협력사의 든든한 성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이 있다면,
중소 협력사에서 쉽게 FTA 관리업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인 "FTA 원산지관리 솔루션"등의 사업들에
최대한의 지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NIFCO
NIFCO KOREA Inc.

NIFCO All rights reserved. Confidential
NIFCO KOREA Inc.
㈜니프코 코리아
We are NIFCO!

첨부 4 성공기업 사례 #2 데코리아제과

enjoy looks & taste

Welcome to Decoria!

발표 순서

목차1	• 회사소개
목차2	• FTA 활용계기
목차3	• FTA 활용내용
목차4	• FTA 활용성과 및 이후 활용계획
목차5	• FTA 활용 애로점 및 건의사항

Decoria enjoy looks & taste

회사 소개

◎ **업체명** : 데코리아제과㈜ ◎ **대표자** : 김 현 묵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192번길 46
◎ **매출액** : 3,232백만원(12년) ◎ **수출액** : 609백만원(12년)/ EU등 18개국 수출

젤리 & 젤리 돌리꽁	초콜릿 & 초콜릿 돌리꽁
	

Decoria enjoy looks & taste

회사 연혁

2002년 05월 06일: 법인설립
2002년 11월 29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2003년 11월 27일: 미국 FDA 등록
2009년 07월 10일: 벤처기업 인증
2010년 04월 01일: NEW EXPORTER 300선정
2010년 06월 01일: 수출유망중소기업
2010년 07월 21일: ISO 22000인증
2010년 11월 30일: 제 27회 무역의 날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2011년 08월 27일: 관세청장 표창
(한-EA FTA 활용하여 EU국가 수출)
2012년 05월 14일: 글로벌 IP 스타기업선정
2013년 10월 10일: 산업통산부 장관 대상 수상(FTA활용우수)

Decoria enjoy looks & taste

데코리아제과 CI, BI, 제조모토

Décor+(Utop)ia의 합성어로 시각과 미각을 겸비한 최고의 캐릭터 과자를 상징.



젤로미란?
젤로 귀엽고(젤로美) 젤로 맛있는(젤로味) 캐릭터 과자를 의미합니다.

Enjoy Looks & Taste.

(시각과 미각을 감동시키는 귀엽고 예쁜 디자인과 최고의 맛을 추구)

5

FTA 활용계기

◆ 제품의 품질과 상품성은 우수하나, 중국의 값싼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였음.

◆ 이로인해 해외 수출의 판로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FTA의 관세 인하 효과를 통해 가격 경쟁력의 갖게 됨.

6

FTA 활용-1

1.FTA 활용 성공 포인트

◆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약 8~9%인하효과)

◆ 자사 브랜드에 대한 해외시장의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 사후관리 철저로 한-EFTA FTA 사후검증 무사통과
('12년 스위스 세관 검증 요청, '13년 원산지기준 충족 판정 받음)

◆ FTA 전담을 실무자가 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전담함

7

FTA 활용-2

2. FTA 활용 내용

◆「퀼른 국제 제과 박람회 2011」박람회에서 만난 독일 바이어에게 FTA가 발효되므로 가격 인하 효과를 설명하고 계약 성사

◆ 한-EU FTA활용에 필수적인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2011년 5월 12일)

◆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및 교육 활용하여 FTA활용 준비

◆ 스위스, 미국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여 수출

8

FTA 활용 성과-1

1. FTA 활용 성과

◆ **독일 시장 개척 성공**(2011년 한-EU FTA활용하여 수출 개시)
-2011년 37,053,417원, 2012년 13,806,692원

◆ **스위스 시장 개척** : 독일 납품으로 신규 수출 창출됨
-2011년 9,646,227원, 2012년 26,061,618원

◆ **미국 시장 개척 성공**
- 미국 내 유수 편의점 입점 성공(7-Eleven, Sweet Factory, Young Art)
-2013년 현재 $2,500 수출, 하반기 $27,500 수출 예정

◆ **스웨덴 시장 개척 성공**
- 2013년 $4,700 수출.

Decoria
enjoy looks & taste

9

FTA 활용 성과-2

2. 수출액 증가

기 간	매출	수출	
	금액	금액	증가율
'10년	2,308백만원	246백만원	
'11년	3,141백만원	387백만원	57.3%
'12년	3,232백만원	609백만원	57.4%

3. 고용창출

기 간	직원수	증가율
'12. 7월	20명	
'12. 12월	33명	65.0%
'13. 9월	44명	33.3%

Decoria
enjoy looks & taste

10

이후 FTA 활용 계획

◆한-터키 FTA를 통해 9% 가격인하 효과를 마케팅에 활용(2013년 진행중)

◆1)한-중국 FTA를 대비하여 바이어 발굴시 FTA이후 효과설명
2)상표등록(Decoria 德考利亚)함(출원일: 2012.12.05)

Decoria
enjoy looks & taste

11

FTA 활용 애로점 및 건의사항

1. FTA 활용 애로점

◆ 중소기업으로써 FTA활용(원산지 인증수출자)이 너무 복잡함
◆ 원료공급업체(원산지 포괄 확인서): FTA증빙서류 협조안됨

2. FTA 활용 건의사항

◆ FTA관련 서류절차 간소화
◆ 원료공급업체 FTA관련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필요

Decoria
enjoy looks & taste

12


감사합니다.
Decoria
enjoy looks & taste
13